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6년 11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계획 알림

1. 「해운법」 제41조,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관련입니다.

2. 연안화물선의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한 2026년 11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지원 계획

1) (**지원 대상**) **2026년 11월 유류 구입분**(9~10월 유류 구입분 추가 신청)

*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경유 가격 일부를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경우 2026년 5월 29일 이후 구매분부터 신청 가능

2) (**대상 선박**) 해운법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운항 선박

3) (**대상 유류**) 실제 내항화물운송사업 수행을 위해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MDO, MF계열 등 경유와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 포함)

* 혼합 블랜딩유는 경유 함유량을 산정하여 지급(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4조)

4) (**지급 단가**)

- **유류세 보조금**: **213원/ℓ** [현재 유류세(396.21원/ℓ) - 2001년 6월 당시 경유 유류세(183.21원/ℓ)]
- **유가연동보조금**: [붙임3]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및 지급단가 참고

가. '추석민생안정대책' 결과에 따른 경유 가격 일부 보조	**나.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경유 가격 일부 보조**
○ **산출식**: {경유가격(원/ℓ) - 기준가격 (1,700원/ℓ)} × 70%	○ **산출식**: {경유가격(원/ℓ) -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 금액(1,961.73원/ℓ)} × 70%
○ **지급 상한액**: 183.21원/ℓ	○ **지급 상한액**: 96.79원/ℓ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5에 따라 유류세 감면을 받는 경우 104.25원/ℓ	○ '26년 5월 29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적용

<공통사항>

○ 경유 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 제공 자료에 따르되, 구매일이 속한 해당 주(週)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적용

○ 경유 구매일은 출하전표일을 기준으로 하되, 출하전표일과 실거래일이 7일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출하전표일을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실거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거래명세표 거래일을 구매일로 하여 지급 가능

나. 신청 방법

1) 제출 서류: 유류세 보조금 지급 청구서, BDR 등 관련 증빙 서류

* 신청서식: 우리청 누리집(http://www.portbusan.go.kr) **알림소통 - 알림 - 공지사항**

2) 제출 기간: **2026.12.1.(화) ~ 12.4.(금)**(우편 접수는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3. 한편, 유류세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적발될 경우 이미 지급된 ①**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해운법 시행령 제21조2에 따른 ②**운항정지 또는 유류세 보조금 지급 정지** 등의 처분 외에 해운법 제56조3항에 따른 ③**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 11월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계획 1부.
2. e나라도움(보조금통합관리망) 등록 및 집행 절차 안내 1부.
3.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 및 지급단가(유가연동보조금 관련)
4.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양식) 1부. 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수신자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귀하 귀하

주무관	**민정원**	행정사무관	**이외경**	과장	전결 2026. 11. 26. **한승현**
협조자					

시행 선원해사안전과-21195 (2026.11.26) 접수

우 48098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 (48755)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https://busan.mof.go.kr

전화번호 051-609-6313 팩스번호 051-609-6319 / in23015006@onmail.go.kr / 대국민 공개